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0 - 8호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4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참조
2. 전부개정 조례안 : 덧붙임
3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4. 의견제출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의회 의장(주소 :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군포시의회 전화 : 031-390-8713, 팩스 : 031-392-4004, 전자메일 : ibwcdi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1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 제출 시 회신을 위해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(활용 후 즉시 폐기)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0. 2. 13 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전행, 장경민,
성복임, 홍경호, 이길호,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개정 이유

-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신설된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의 연구활동의 범위,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연구활동의 범위 및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, 변경,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-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14조)
-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함(안 부칙 제2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”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·개발 등

을 목적으로 군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2. “연구활동비”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·토론회·현장조사·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
3. “정책개발비”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·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활동의 범위)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정 및 의정 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(이하 “연구용역”이라 한다)
2. 정책의 연구·개발을 위한 회의, 토론회, 공청회, 현장조사, 벤치마킹 등
3.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

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군포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1.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·개발에 종사하는 사람
2.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용역 수행 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.

제5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설치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4명을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⑨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당연직 및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,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
2. 연구활동계획(변경)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
3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가부
4.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조정 및 승인(필요성, 주제·사업비·기간 등의 적정성)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심사결과의 알림)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, 활동계획, 활동계획 변경,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,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연구활동계획의 제출)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구활동비의 지원 등)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

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% 이내로 한다.

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)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,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등록취소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
 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.

제16조(수당)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활동 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2020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연구단체명 :
2. 연구과제명 :
3. 연구목적 : *구체적으로 작성
4. 연구단체 인적사항

연번	성명	서명	비고

년 월 일

제출인 : 대표의원 ○○○ (인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변동의원	당초	의원	
	변경	의원	
변동일자	년 월 일		
변동사유			
기타			

년 월 일

제출인 : 대표의원 ○○○ (인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연구활동(연구용역) 계획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내용		주제	
		목적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 연구용역, 세미나 등 세부내역	
연구활동비	총액	금 원(₩)	
	연구용역	금 원(₩) (세부내역 별첨)	
	연구용역외 연구활동비	금 원(₩) (세부내역 별첨)	
결과물 활용계획			

년 월 일

제출인 : 대표의원 ○○○ (인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○○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대표자		의원	
연구주제			
심사 결과	심사내용		
	연구 활동비	총액	금 원(₩)
		연구용역	금 원(₩)
		연구용역외 연구활동비	금 원(₩)

년 월 일

군포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장 ○○○ (인)

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

연구활동(연구용역)계획 변경신청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에 따라
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주제 변경내용	당초	주제	
		목적	
	변경	주제	
		목적	
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	(별첨 : 구체적으로 서술)
연구 활동 비	총액	금	원(₩)
	연구용역	금	원(₩) (세부내역 별첨)
	연구용역외 연구활동비	금	원(₩) (세부내역 별첨)
특기사항			

년 월 일

제출인 : 대표의원 ○○○ (인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6호 서식]

연구활동(연구용역) 결과보고서

「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○○년도
○○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 구 단 체 명				
연구내용	연구주제			
	연구목적			
연구 활동 비	총액	금 원 (용역비 + 세미나 등 개최비용)		
	집행액	금 원		
	잔 액	금 원		
	집행내역	연구용역		
		연구용역 외 연구활동비		
활용실적(계획)				

- 붙임 1. 연구활동(연구용역) 결과보고서 1부.
2. 집행 관련 증빙자료 1부.

년 월 일

제출인 : 대표의원 ○○○ (인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7호 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부

[illegible]

소관 실·과·소		의 회 사 무 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의 회 사 무 과 장 전 형 상
	담당 팀장 성 명	의 정 팀 장 이 춘 미
	담 당 자 전 화	최 은 경 (031-390-8713)